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참 고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20년 5월 29일(금) 00시(자정) 이후 보도 가능

배포일시	2020. 5. 28(목)	담당부서	통상분쟁대응과 산업피해조사과
담당과장	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 한상덕 과장(044-203-5860)	담 당 자	박근형 사무관(044-203-4884) 송병철 사무관(044-203-5864)

WTO 한-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

-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지 -

□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*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**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,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금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하였음.

*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, 일반 기계, 전자 제품 등에 사용. 국내시장규모('13) 약 647억원(국산 비중 23%(148억원), 일본산 비중 73%(472억원))

** '15.8월부터 5년간('15.8.19.~'20.8.18.) 日 SMC社에11.66%,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.77% 부과

□ 우리나라는 상기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*('19.9.10) 한 바 있으며, WTO 상소기구가 일부 쟁점**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음.

* WTO는 우리 무역위원회의 △국내산업피해, △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, △덤핑 수입품의 물량효과, △국내산업범위 설정, △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·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(우리측 승소)

** ①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, ②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요구

□ 이에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을 위해 추가 조사·분석 및 조치*를 수행하였으며,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1일 "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"를 채택하였음.

* ①가격 비교방법을 보완하여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, ②국내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

□ 아울러,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, 기획재정부는 이를 금일 관보에 게재하였음.

□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,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.

□ 금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(DSB: Dispute Settlement Body)와 분쟁당사국(일본)에 통지한 것임.

□ 한편,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('15.8.19~'20.8.18) 부과키로 계획되어 있었던 바,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상분쟁대응과 박근형 사무관(☎ 044-203-48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분쟁 경과

○ ‘15.1.20. 무역위, 일본산 밸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

* ‘14.2.21 조사개시/ ’14.6.26 예비판정/ ‘14.10.23 공청회

○ ‘15.8.19. 기재부, 11.66~22.77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(‘15.8.19~‘20.8.18)

○ ‘16.3.15. 일본 정부, WTO 제소

○ ‘16.4.28. 양자협의 진행

○ ‘16.6.9. 일측, WTO 패널 설치 요청

○ ’16.7.4. 패널 설치

○ ‘16.8.29. 패널 구성

○ ‘17.3.1~2. 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‘17.5.30~31. 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‘18.4.12.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○ ‘18.5.28. 일측,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

○ ‘19.4.4~5.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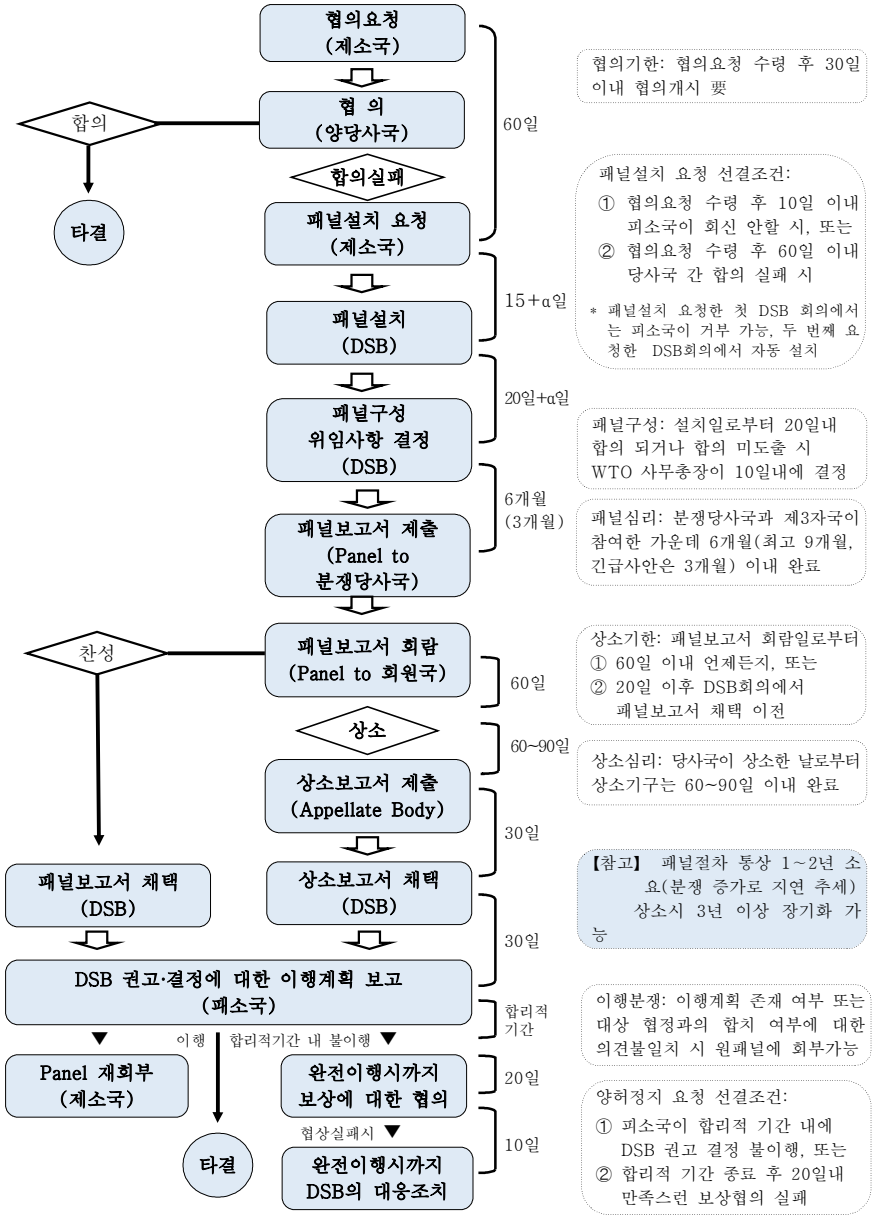
○ ‘19.9.10.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○ ‘19.11.14 일본측과 이행기간(8개월) 합의(‘19.9.30~‘20.5.30)

참고 2 상소 판정 요지

쟁점		순번	쟁점, 패널, 상소 판정	패널	상소
실체적 쟁점	**가격효과** (3.1, 3.2조)	1	**(쟁점)** 덤핑수입의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혹은 인상억제 등 영향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가격비교방법 부적절, 고가판매와 가격인하간의 합리적 설명 부족**	**승소**	**부분 번복**
	물량효과 (3.1, 3.2조)	2	**(쟁점)** 덤핑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국내산업 범위 (3.1, 4.1조)	3	**(쟁점)**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국내산업 피해 (3.1, 3.4조)	4	**(쟁점)** 피해분석이 객관, 타당했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	5	**(쟁점)** 자금조달 능력,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 **(패널)** 적절히 고려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**승소**	**유지**
	인과관계 (3.1, 3.5조)	6	**(쟁점)** 덤핑 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 검토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	**승소**	**不상소**
		7	**(쟁점)** 인과관계 분석時 가격효과 등 별도심사 가능 여부 **(패널)** 별도심사가 가능하며, 이에 근거한 가격비교방법상 흠결로 인해 협정 비합치 **(상소) 별도 심사는 부적절하며, 따라서 비합치 판정도 번복**	패소	**번복 (승소)**
		8	**(쟁점)**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판정이 객관, 타당한지 여부 **(패널)** 상기 인과관계 판정이 협정위반이라는 근거 없음.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**승소**	**유지**
		9	**(쟁점)**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 **(패널)** 덤핑 이외 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 못함.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**승소**	**유지**
절차적 쟁점	**비밀정보 처리** (6.5조)	10	**(쟁점)** 비밀정보 분류요청시 ‘정당한 사유’의 명확한 제시 여부 **(패널)** ‘정당한 사유’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, 비밀정보로 처리한 것은 협정위반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패소	유지
	공개요약본 정보수준 (6.5.1조)	11	**(쟁점)** 기업의 자료제출 시,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의무 이행 여부 **(패널)** 공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아 협정위반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패소	유지
	핵심적사실 통보 (6.9조)	12	**(쟁점)**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(무역위 최종의결시)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패널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최종판정에 대한 공고 (12.2, 12.2.2조)	13	**(쟁점)**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	**승소**	**不상소**

붙임 3 **WTO 분쟁절차도**



협의기한: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협의개시 要

패널설치 요청 선결조건:
① 협의요청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 안할 시, 또는
②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

* 패널설치 요청한 첫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이 거부 가능, 두 번째 요청한 DSB회의에서 자동 설치

패널구성: 설치일로부터 20일내 합의 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

패널심리: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(최고 9개월, 긴급사안은 3개월) 이내 완료

상소기한: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
① 60일 이내 언제든지, 또는
② 20일 이후 DSB회의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이전

상소심리: 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상소기구는 60~90일 이내 완료

【참고】 패널절차 통상 1~2년 소요(분쟁 증가로 지연 추세)
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

이행분쟁: 이행계획 존재 여부 또는 대상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 시 원패널에 회부가능

양허정지 요청 선결조건:
①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DSB 권고 결정 불이행, 또는
②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내 만족스런 보상협의 실패